

□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입니다.

□ 2005년 8월 26일 조계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과

□ 2005년 8월 26일 이범윤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「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제안이유는

○ 보건복지부 2005결핵관리지침에 의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노인, 장애인, 재소자도 추가 지정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□ 주요 내용은,

○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 「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」 ”로 변경하고

○ 수수료 징수 대상을 전염성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하며

- 「의료급여법」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

- 「주민등록법」상의 65세 이상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
- 「행형법」에 의한 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며,

- 제4조의 수수료를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2,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
  -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외의 재해이재민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
  - 면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 감소로 인한 수수료 재활용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